

관창일반산업단지(관창지구)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,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『관창일반산업단지(관창지구)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』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5.

보령시 장

1 사업 집행계획

가. 사 업 명: 관창일반산업단지(관창지구)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나. 시행기관: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

다. 사업의 주요내용

1) 위 치: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일원

2) 과업내용

- 과업지시서 참조

라. 과업기간: 착수일로부터 18개월

마. 기초금액: 금1,168,070,000원(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)

바. 입찰예정시기: 2026년 8~9월 중 예정

※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(P.Q.)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,
입찰 예정 시기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 입찰 및 계약방법

가. 본 입찰은 **총액입찰, 일반경쟁입찰, 적격심사 대상**, 청렴계약이며,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**사업수행능력평가(P-Q) 대상** 용역입니다.

- 1) 적격심사기준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(2026. 06. 29.)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.
- 2) 평가기준은 <별표1> [기술관련법령에 따라 **사업수행능력평가(P-Q)를 하는 기술 용역**]
“1.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-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”을 적용합니다.

3 참가자격

가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 현재,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라 **다음 중 어느 하나**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자

- 1) **건설엔지니어링업(종합)**
- 2) **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·일반)**
- 3) **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·설계 등 용역·일반)**

다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**엔지니어링사업자**로 신고한 자
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**기술사사무소**를 등록한 자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건설부문: 상하수도, 구조, 토질·지질 | 2. 기계부문: 일반산업기계 |
| 3. 전기부문: 전기설비 | 4. 환경부문: 수질관리 |

라. 「공간정보관리법」 제44조에 의한 **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**을 등록한 자

- 「판로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·소기업·소상공인·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
(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)

마. 「판로지원법」 제8조등과 관련, **지질연구조사서비스**를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
- 「판로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·소기업·소상공인·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
- 「판로지원법」 제9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5조에 의한 **직접생산확인증명서**
[세부품명: 지질연구조사서비스(물품분류번호: 8115179901)]를 소지한 업체
(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)

4 공동도급의 허용

가.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부문과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을 구분한 공동계약으로 수행하여야 하며, 단독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.

엔지니어링 부문은 제3항 나. 및 다.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자들 간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

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각각 제3항 라. 및 마.의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.

엔지니어링 부문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전체 공동계약은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결합한 혼합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.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해당 분담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, 이를 엔지니어링 부문에 포함하여 수행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.

- ※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설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과업으로서 조사성과에 따라 설계 검토·변경 및 추가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, 일정·품질·성과품 및 책임관계의 통합관리와 긴밀한 기술협업을 위해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. 다만, 해당 전문분야의 독립적인 수행, 전문업체의 직접 참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도록 합니다.

나. 과업별 예정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	엔지니어링 부문	지질조사 부문	측량조사 부문
예정 분담비율	92.3%	5.0%	2.7%

- ※ 위 분담비율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, 입찰공고 정정 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다.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배치하고, 분담이행 분야의 참여기술인은 해당 분담업체가 배치해야 합니다. 참여기술인 수의 산정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.

- ※ 단,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는 제외하고,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에는 해당 분담비율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.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.

라.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의 공동이행 부분에 대한 최소 출자비율은 5% 이상으로 합니다. 이 최소 출자비율은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마.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,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담 업체를 포함합니다. 대표사는 엔지니어링 부문의 공동이행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, 출자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의로 대표사를 정합니다.

- 바.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,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. 지역업체 참여도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, 2026. 06. 29.)에 따라 부여, 평가합니다.
- ※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가능한 경우 49%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.
- 아.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, 2026. 06. 29.)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.

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

- 가.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: 나라장터(<http://www.g2b.go.kr>) 게시
- ※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.
- 나. **제출일시: 2026년 08월 19일(수요일) 10:00 ~ 15:00**
- ※ 제출기한(시간)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.
- 다. **제출방법: 직접방문제출(우편, 팩스, 퀵서비스 등 불가)**
- 라. **제출장소: 보령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 (☎041-930-3731)**
- ※ **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, 3층 지역경제과**
- 마. 제출서류
-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.(대표회사 공문, 공동도급사 확인)
 -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(원본) 1부.
 -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[원본1부, 사본9부(용역사명 미기재)]
 -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공동도급사 포함), 공동도급협정서(공동수급체 구성시)
 - 대리참석시 위임장,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 - 제출서류 내용이 담긴 USB 1개

6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

- 가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후 우리 시에서 정한 **일정점수(87.5점)**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.
- 단,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.

나.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, 입찰일시,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1> [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(P.Q)를 하는 기술용역]

1.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.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(79.995%)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
다. 종합평점(100점)은 사업수행능력평가(64점) + 기술인경력평가(1점) + 지역업체참여도(3점) + 경영상태(2점) + 입찰점수(30점) + 기술인력보유상황(△10점) + 계약질서준수(△1.0점)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.

- 1)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(1점)를 모두 부여합니다.
- 2)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% 이상인 경우 3점, 30% 미만 20%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, 20%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.
- 3)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.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(2점)를 모두 부여합니다.

7 기타 유의사항

가.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(공제)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나.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(인감,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) 이어야 합니다.

- 등록서류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인감도장(사용인감, 사용인감계),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하는 서류(면허사본 및 수첩사본),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, 공동도급협정서(공동도급시)

-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, 팩스번호, 담당부서, 담당자명을 기재

다.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.

- 라. 계약체결 후 참여기술인 사망, 질병,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(등급)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.
- 마.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기술인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**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,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바.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(2026. 06. 29.))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, 2026. 06. 29.))」,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(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)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사.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아.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.
- 자.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,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.
- 차.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**보령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(☎ 041-930-37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*